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637호
- 나. 발의자 : 김인제 의원(찬성자 17명)
- 다. 발의일자 : 2023년 03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04월 03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일정 지역 내 집적도가 높거나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산업·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진흥지구 신청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신청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자치구의 신청 없이도 진흥지구를 직접 지정하거나 진흥계획을 직접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선정 절차 지연을 야기하는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정비하여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 수정(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 나. 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을 자치구청장의 신청 없이 시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제3항 및 안 제12조제1항)
- 다. 진흥지구의 지정해제·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라. 진흥계획의 수립 주기 규정(안 제12조제11항).
- 마. 진흥지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부위원장 및 간사의 역할, 공무원인 위원에 대한 대리참석 규정 신설(안 제14조제9항~제11항).
- 바.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0조의2 제4호)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산업·유통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 지정 절차 명확화, ▶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서울시 직접 추진 근거 마련, ▶ 진흥계획 수립 주기 신설, ▶ 진흥지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 ▶ 산학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개선하고자 발의됨.

나. 산업·유통 및 특정 개발진흥지구 현황

-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 등의 기능을 집중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를 산업·유통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우선 공급,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부동산 지방세 감면, ▶자금융자 등을 지원함.

- 현재 종로 귀금속 지구 등 8개 지역이 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5개 지역에 진흥계획 수립과 앵커시설 운영을 통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산업·유통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

유형	지구명	위치	면적(㎡)	대상지 선정일	지정일	진흥계획	지구단위 계획
특정	종로 귀금속	묘동 53번지 일대	140,855	2009.4.24.	2010.1.28.	2013.01.03.	2016.07.21
산업	성수 IT	성수동2가 일대	539,406	2009.4.24.	2010.1.28.	2013.01.03.	2021.10.14
특정	마포 디자인출판	서교동 395번지 일대	746,994	2009.4.24.	2010.1.28.	2013.01.03.	2016.04.28
”	동대문 한방	용두동, 제기동 일대	211,355	2010.6.3.	2013.7.26.	2015.06.11.	-
”	면목 패션	면목동 136번지 일대	292,000	2010.6.3.	2016.4.28.	2017.07.24.	2022.1.26.
”	여의도 금융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387,469	2009.4.24	2010.1.28.	2023.03.16.	-
”	중구 인쇄	충무로 4, 5가 일대	303,240	2010.6.3.	2017.7.13.	수립 중	-
”	중구 금융	삼목동 50-1번지 일대	281,330	2009.4.24	2010.1.28.	추진중단	-

○ 지정현황 : 8개 지구(5개 진흥계획 수립·고시, 3개 진흥계획 수립 중)

* 대상지 선정후 미추진(3개소) : 중구 디자인·패션('10.6월), 마포 웨딩('10.6월), 강남 디자인('10.6월)

** 신규 대상지 선정(1개소) : 양재 ICT('21.12월)

- 그러나 ▶진흥계획 수립과 진흥지구 지정 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절차 지연, ▶진흥계획 수립단계에서 권장업종 변경 곤란, ▶사업 중단 후 진흥지구 취소 절차 미비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지난 제315회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함.

다. 주요 개정사항

(1) 진흥지구 지정 절차 명확화(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 개정안은 진흥지구의 정의에 “법에서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결정·고시”라는 요건을 추가함.

- 이는 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진흥지구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한 것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 7. (생략)
8. 개발진흥지구
가. (생략)
나.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 ·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 마. (생략)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시 직접 진흥지구 지정 근거 마련(안 제11조)

- 개정안은 지정 대상지역이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거나 ▶전략 산업의 유치 · 육성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은 시장이 직접 진흥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제3항), 구청장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직접 지정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항).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 · 운영 등) ①~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 ·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대상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하되, 이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과 면적, 권장 업종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p> <p>1. ~ 3. (생략)</p> <p>④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진흥지구의 지정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 ·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할 때에는 -----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대상지역이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거나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직접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 -----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대상지를 선정하고자 ----- ----- 작성하여 제14조에 따른</p>

	<u>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p><u>⑥ 시장은 직접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대상지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선정된 지정대상지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u></p> <p><u>⑦ 시장은 지정된 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u><삭 제></u> <u><삭 제></u>

- 종전에 진흥지구와 지정대상지를 지정 ·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치구 간의 이견으로 인해 후속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 서울시의 핵심산업인 금융, 뷰티패션, AI 등은 직접 지구를 지정하면서 진흥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임.

- 다만, 개정안은 시가 직접 진흥지구와 지정대상지를 지정 · 선정할 경우 자치구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규정 외에는 자치구가 지구 지정을 반대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진흥지구 지정해제 · 변경 규정 정비(안 제11조의2 신설)

-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진흥지구 변경(제11조제7항), 지정 해제(제12조 제10항), 지정대상지 변경 · 취소(제11조제6항) 관련 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정비함.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1조의2(진흥지구의 지정해제 · 변경 등)</u></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에서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p> <p>1. 제12조제9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흥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진흥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p> <p>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지정 대상지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p>

- 이는 진흥지구와 지정대상지의 변경 · 지정 해제와 관련된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면서 입법의 간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4) 시 직접 진흥계획 수립 · 결정 근거 마련 등(안 제12조)

- 개정안은 시장이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직접 진흥계획을 수립 · 결정하도록 하고(제1항), 진흥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정비 하며(제6항), 진흥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함(제11항).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	제12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진흥지구 지정을 신청

<p>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u>지정 신청과 함께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1. ~ 7. (생략)</p> <p>② ~ ⑤ (생략)</p> <p>⑥ <u>제2항과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u></p> <p>⑦ <u>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u></p> <p>⑧ ~ ⑨ (생략)</p> <p>⑩ <u>시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이 진흥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진흥계획의 수행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 진흥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구지정 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p><신 설></p>	<p>하는 경우 ----- -----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진흥 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시장 또는 구청장이 진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삭 제></p> <p>⑧ ~ ⑨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⑪ <u>시장 또는 구청장은 산업환경 및 지역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u></p>
---	--

- 현행 조례는 진흥계획 수립 주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현재 진흥 계획이 수립된 5개 지구는 모두 계획기간이 만료된 상황임.
- 향후 진흥계획 현행화 여부를 지구운영 평가와 인센티브에 연계함으로써 산업·지역여건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함.

<진흥계획 수립 현황>

지 구 명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출판	동대문 한방	성수 IT	중랑 패션·봉제
계획기간	2010~2015	2012~2015	2014~2018	2011~2020	2017~2022

(5)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정비(안 제14조)

- 개정안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진흥지구위원회”)의
 - ▶ 당연직 위원의 자격(제2항제3호), ▶ 위원의 임기(제3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제9항), ▶ 간사(제10항), ▶ 당연직 위원의 대리 참석(제11항) 관련 규정을 신설함.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② 진흥지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함께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당연직 위원 : <u>경제정책실장, 도시 계획국장</u> 4. (생략) 	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② (현행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당연직 위원 : <u>전략산업 또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u> 4. (현행과 같음)

<p>③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③ 위원의 ----- ---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의회 의원의 -----.</p> <p>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⑩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진흥 지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p> <p>⑪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한 사람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p>
---	--

-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경제정책실장에서 전략산업 관련 국장으로
향하고,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의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한정하여
진흥지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 다만, 대리참석 사유인 ‘부득이한 사정’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이를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당연직 위원 제도는 심의와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직위로 대표
되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이므로¹⁾ 대리참석자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1)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대리참석 관련 법제처 의견 참고(법제처, 의견22-0066).

<수정의견>

개정안	수정의견
<p>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⑩ (생략)</p> <p>⑪ 공무원인 위원이 <u>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면</u>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한 사람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p>	<p>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⑩ (개정안과 같음)</p> <p>⑪ 공무원인 위원이 <u>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에는</u>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후단 삭제></p>

(6)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20조의2)

- 개정안은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산학연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p>제20조의2(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3. (생략)</p> <p>4.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p> <p>5. ~ 6. (생략)</p>	<p>제20조의2(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5. ~ 6. (현행과 같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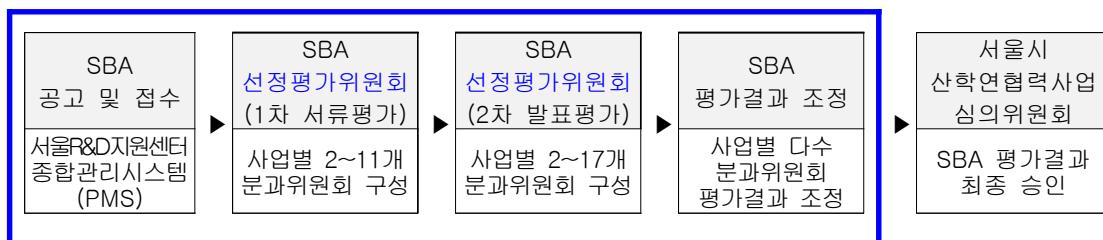
- 산학연위원회는 산학연 협력사업의 심도 있는 수행을 위해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음.

<산학연위원회 개요>

-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당연직 : 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 위촉직 : 시의원, 기업인, 언론인, 교수 등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 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시의원은 위촉 당시 소속된 상임위 재임기간)
- 기능
 - 협력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협력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협력사업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 그러나 산학연협력사업 사업자 선정 절차를 서울경제진흥원에 설치된 ‘서울형 R&D 과제 선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하면서 산학연위원회의 사업자 선정 기능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게 됨.

<산학연협력사업 사업자 선정 절차>



- 산학연협력사업 사업자 선정에 있어 시간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형식적 심의에 그치고 있는 산학연위원회의 기능을 과제 우선순위, 사업비 규모 등의 조정역할에 집중하도록 정비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조례로 설치된 산학연위원회의 기능을 서울시 내규(산학연협력사업

운영 요령)에 따라 설치된 ‘서울형 R&D 과제 선정평가위원회’에
이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